

의안번호	2209467
의 퇴 인	최보운 의원
회 답 일	2025.5.29.
추계번호	25C1976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4조의2 (재난시 장애인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
2	안 제24조의3 (장애인 재난대피 시설 지정)	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
3	안 제24조의4 (재난안전교육 등)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 특화된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여야 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2 (재난시 장애인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4조의3 (장애인 재난대피 시설 지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24조의4 (재난안전교육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,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와 장애인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, 개정안은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임

가. 재난시 장애인 지원(안 제24조의2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¹⁾를 할 때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의 조정 및 신규 사업 추진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데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에서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 - 또한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“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·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－ 2025년 기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“장애인안전대책강화” 사업 예산으로 1억 3,000만원이 편성됨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3. "재난관리"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4. "안전관리"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나.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(안 제24조의3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고,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시 필요한 정보, 즉 현행 경비 외에 보조 비용을 통하여 수행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규모,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산출하는 데 어려움
 - 또한, 재난 시 장애인, 어린이, 노인 등 대상으로 접근 용이한 대피시설인 민방위대피시설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, 안전용품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²⁾

다. 재난안전교육 등(안 제24조의4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³⁾에 따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 시 장애인에 특화된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시설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규모(행정구역별 인구 분포, 접근성, 이재민 발생현황 등)에 따라 달라지는데, 현 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3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또한,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고, 개정안에 따른 세부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안전체험시설 설치·운영 시 장애인에 특화된 시설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곤란
[2025년 기준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현황 참고]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현황

연번	지역	개관일	구분	위치	규모 (부지면적/ 연면적)	사업비 (국비: 소방안전 교부세)	사진
1	인천	'21.10월	특성화 (항공)	서구 봉오재1로 120 (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)	9,784㎡ / 7,070㎡ (지상 4층, 지하 1층)	279.9억 (국 100, 시 179.9)	
2	광주	'21.10월	대형	북구 능안로30번길 3 (오치동)	14,062㎡ / 7,806㎡ (지상 4층, 지하 1층)	262.5억 (국 100, 시 162.5)	
3	울산	'18.9월	특성화 (원자력· 화학)	북구 산하중양2로 87-33 (강동 관광단지 내)	17,013㎡ / 7,610㎡ (지상 3층, 지하 1층)	327.5억 (국 100, 시 227.5)	
4	경기	'22.4월	대형	오산시 북삼미로 22 (내삼미동)	16,745㎡ / 7,094㎡ (지상 1층, 지하 1층)	307.7억 (국 100, 도 107.7, 시 100)	
5	충북	'21.7월	중형	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(월오동)	25,623㎡ / 2,940㎡ (지상 2층)	120억 (국 60, 도 60)	
6	경남	'21.6월	중형	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-28	71,824㎡ / 2,962㎡+1,207㎡ (본관 2층+별관 2개동)	187억 (국 60, 도 127)	
7	제주	'20.11월	중형	제주시 평화로 1885 (애월읍)	46,218㎡ / 5,427㎡ (지상 3층, 지하 1층)	256억 (국 60, 도 196)	